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9. 9. 7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개정이유

- 0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을 허가 하고 있으나,
- 0 3분이라는 허가 시간이 너무 짧아 시정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발표에 한계가 있어 발언시간을 5분으로 늘려 충분한 의견발표 기회를 제공 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0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의원에게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음(안 제37조의 2 개정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

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의2(3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 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<u>3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3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</u>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<u>3분자유발언</u>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와 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<u>3분자유발언의</u>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	제37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</u>----- ② <u>5분자유발언</u>을 ----- ----- ----- ----- ③ <u>5분자유발언의</u> ----- -----